

##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1068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3415(병합)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27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윤승준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19.01.10. 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6. 1. 26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오테석	전부	현황조사	창고 임차인	2021.02.01~	20,000,000	1,700,000	2021.02.03			
	1층 전부	권리신고	점포 임차인	2021.01.08.~	20,000,000	1,750,000	2021.02.03.	2025.06.18.	2025.6.19.	
<b>&lt;비고&gt;</b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일괄매각. 제시외 건물 포함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1068

[물건 1]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0-1  
공장용지 1683㎡

2. 체시외 1-1 보일러실 조립식판넬조 4.2㎡  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0-1, 555-4  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8길 13  
위 지상  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 
391㎡
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555-4  
공장용지 544㎡

4.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0-4  
대 609㎡

5.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555-5  
대 236㎡

감정평가액		1,692,518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2	1,692,518,000	169,251,800
2회	2026.04.16	1,184,762,000	118,476,200
3회	2026.05.14	829,333,000	82,933,300
4회	2026.06.11	580,533,000	58,053,300
일괄매각. 체시외 건물 포함			